

이사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 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 장)

- ① 이사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회일 1일 전까지 의장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로 먼저 선임된 이사가,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6 조 (선임독립이사)

- ①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선임독립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회회의 소집 및 주재
 - 2. 독립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 3. 독립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7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 9 조 (이사회회의 개최)

이사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 10 조 (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1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회의 성립 및 결의)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
- ② 이사회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질서유지)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부의사항

제 13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및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 2. 정관의 변경
 - 3. 자본의 감소
 - 4. 회사의 해산, 합병(피합병 포함),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5.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7. 이사의 보수, 선임 및 해임
 - 8.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0. 주식배당 결정,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주식의 소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상법 제542조의 9의 자산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1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위임사항 등
13. 기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5. (삭제)
6. 공장 및 해외 현지법인(회사가 직접 출자한 회계상 연결 대상인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다만, 지점, 사무소, 출장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9.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10.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3.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
4.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의 소각
6.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7. 자산 재평가 실시
8. 주권의 액면분할 및 병합
9. 배당에 관한 사항

10.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1. 건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12. 건별 1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13. 건별 1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단,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갹신은 제외)
14. 건별 2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5. 건별 200억원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단,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갹신은 제외)
16. 건별 200억원 이상의 타인을 위한 가지급 및 대여 (단, 종업원(최대주주등 이외의 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는 제외)
17. 건별 200억원 이상의 증여 제공
18. 건별 자기자본 5% 이상의 대규모 차입
19. 건별 10억원 이상의 기부

④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의장의 결정
2.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3.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4. 이사의 경업,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
5. 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개폐

⑤ 기타 경영사항

1. 주주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2. 이사가 업무집행상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요구한 사항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제 14 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 ① 임원의 승진, 미등기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5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5 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 (위원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 및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제 17 조 (위원회의 결의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기타사항

제 18 조 (상정안의 제출)

- ①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 상정안을 이사회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접수된 상정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안 제출 이사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상정일자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제출 이사와 협의, 의장에게 품의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 한다.

제 19 조 (이사회 장소)

이사회 개최장소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위 임)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사록)

- ① 이사회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이사회회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사무국)

이사회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3 조 (규정의 개·폐 및 우선적 효력)

-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각 규정이 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1.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3년 4월 1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목적)은 상호변경일인 2023년 3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년 5월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4년 3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6년 3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4조, 제6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026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4조, 제6조의

독립이사는 상법(법률 제20991호)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 2 조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적용기준)

1. 「제4장 부의사항 제 12조 (부의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다. 다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제 5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6조 (위원회의 결의 및 운영) ①항」 후단의 “감사위원회”관련 내용은 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만 해당한다.